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3

발의연월일: 2024. 6. 3.

발 의 자 : 임이자 · 박충권 · 서일준

정희용 · 이철규 · 구자근

안철수 · 강대식 · 김승수

송언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기후변화가 생태계, 대기, 물환경, 산림,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 위험 및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평가하는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나 기업 등이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응하고, 자연재해 취약 지역과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대 책을 마런·실행하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제 공하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이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국민 등이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통해 수집된 기후위기 적응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하기 위하여 정부가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및 제37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기후위기 적응정보"란 기후변화가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방재 등에 미 치는 영향과 취약성, 위험 및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 평가하고,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마련·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집· 활용되는 모든 자료와 분석 결과물 등을 말한다.

제37조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를 "대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후위기가 생태계,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 위험 및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평가하는 기후위기 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를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관리·활용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

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관리체계 및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관리체계,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관리체계 및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 관리체계"를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관리체계,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제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으로,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정부는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를 통하여 수집·생산된 기후 위기 적응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 치단체, 산업계·연구계·학계 등이 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u><신 설></u>	<u>11의2. "기후위기 적응정보"란</u>
	기후변화가 생태계, 생물다양
	성, 대기, 물환경, 보건, 농림
	·식품, 산림, 해양·수산, 산
	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향과
	취약성, 위험 및 사회적・경
	제적 파급효과를 조사ㆍ평가
	하고, 기후위기 적응 정책을
	마련·추진하는 과정에서 수
	집・활용되는 모든 자료와
	분석 결과물 등을 말한다.
12. ~ 17. (생 략)	12. ~ 17. (현행과 같음)
제37조(기후위기의 감시·예측	제37조(기후위기의 감시·예측
등) ① 정부는 <u>대통령령으로</u>	등) ①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상시 측	
정・조사하고 기상현상에 대한	
관측・예측・제공・활용 능력	
을 높이며 기후위기에 대한 감	
시 · 예측의 정확도를 향상시키	

는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기후위기가 생태계, 건, 농림 · 식품, 산림, 해양 · 수 산, 산업, 방재 등에 미치는 영 향과 취약성, 위험 및 사회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조사 · 평가 하는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 계를 구축 · 운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상 정보관리체계 및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조사・연 구, 기술개발, 전문기관 지원, 국내외 협조체계 구축 등의 시 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기후위기 적응정보 생물다양성, 대기, 물환경, 보 를 효과적으로 수집 • 관리 • 활 용하기 위한 기후위기적응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③ 정부는 기후위기적응정보관 리체계를 통하여 수집 · 생산된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 연구 계·학계 등이 이를 손쉽게 활 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폼을 구축 • 운영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기상 정보관리체계, 제2항에 따른 기 후위기적응정보관리체계 및 제 3항에 따른 기후위기적응정보 통합플랫폼-----

④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관리
체계 및 제2항에 따른 기후위
기적응정보관리체계의 구축・
운영, 제3항에 따른 시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관리
체계, 제2항에 따른 기후위기적
응정보관리체계 및 제3항에 따
른 기후위기적응정보통합플랫
<u>폼</u> <u>제4항</u>